

##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

### 「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주요내용」

#### 1. 청구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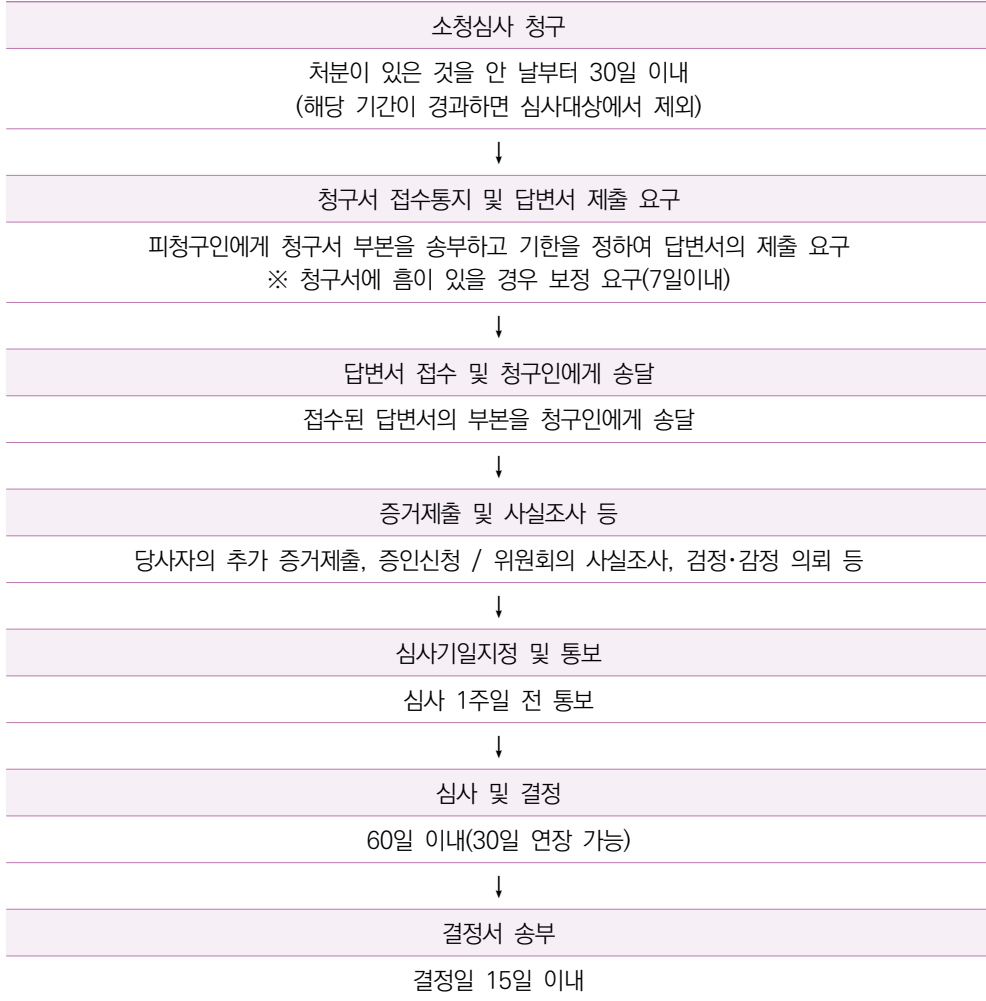
##### 가. 징계처분

- 1) 국·공립대학(사립대학)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(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)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·감봉·견책 처분(파면·해임·정직·감봉·견책 처분)
  - 국·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포함

##### 나.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

- 1) 재임용거부
    - 국·공립대학(사립대학)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(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)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(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)
  - 2) 직권면직
    - 국·공립대학(사립대학)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(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)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 처분
  - 3) 직위해제
    - 국·공립대학(사립대학)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(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)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 처분
  - 4) 휴직
    - 국·공립대학(사립대학)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(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각호)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 처분
  - 5) 강임
    - 국·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
    -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
  - 6) 기타
    - 전보처분, 학과이동처분, 수업금지처분, 의원면직처분, 호봉정정거부처분,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·부당한 처분
- ※ 교원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경우
-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, 조교,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
  -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

## 2. 처리절차



## 3. 기타(소청심사 특징)

- 가.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음
- 나. 경고·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
- 다.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면,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없음
- 라. 처분권자가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, 감독청으로부터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